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422
----------	------

제출년월일 : 2010년 3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제천시 청전동 653번지의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제천시 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으로 한다)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08.11.10)
- 시설의 주요기능 및 사업내용은 노인교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대외적인 건물의 명칭은 노인회관으로 하기 위하여
- 노인교실 및 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와 운영방법 등을 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천시 청전동 653번지의 구 보건소 건물을 기능은 “노인교실”로 건물의 명칭은 “제천시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안 제1조~제3조)
- 회관의 업무수행 범위(안 제4조)
-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제11조)
- 위탁운영에 대한 명시(안 제13조)
 - 시장은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과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 관리 할 수 있다.
 - 위탁 운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3년 단위로 재계약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불임

-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시키고 노인들의 여가 선용 및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교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천시 노인교실의 시설명칭은 “제천시 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노인회관은 제천시 청전동 653번지에 둔다.

제4조(업무) 노인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
2. 노인대학의 설치운영
3.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4.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
5. 노인들의 취업알선과 일자리사업 수행
6. 경로당 조직관리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사무실
2. 교육 및 회의실
3. 상담실
4. 취미, 교양실
5. 식당 및 휴게실
6.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제천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은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 일지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노인회관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의 결정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③ 노인회관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정신 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①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시설에 대한 별표 1의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에 관한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① 노인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노인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과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노인회관을 위탁 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노인회관운영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의 신설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따른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시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그 사무에 대하여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이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시설사용 중 사용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 용 료

구 분	운영 기준	이 용 료	비 고
노인대학	1인/년	30,000원	
교양프로그램	1인/1종	시중요금의 5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아·미용료	1인/1회	시중요금의 5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식 비	1식	시중요금의 50%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시중요금의 기준은 연초 업소 5개소이상 요금의 산술평균임

【별표 2】

사 용 료

구 분	운영 기준	사 용 료	비 고
강당 (다목적실)	2시간	30,000원	◇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20% 가산 ◇ 야간(18:00~22:00)은 20% 가산

☆ 단, 프로그램진행에 지장이 없을 시만 대관 함

[관 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2007.10.17, 2007.12.14>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의2.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7.30】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8.2.29>

③삭제<1999.4.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작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제4장 보조금

제42조 (보조금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 (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종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충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 (시설의 위탁)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 2004.9.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 2004.9.6>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지방자치법

-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별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6.5>
-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경로복지팀 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과	복지사업과	복지인력개발과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기간이 종료되어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 래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2010-151호
3. 공고기간 : 2010.2.11 ~ 3.2(20일간)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불임
6. 공고결과

○조회수 : 36회

○의견제시자 : 없음

불임 : 공고안 1부 “끝”